

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제정 2011.10.21.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0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소송 등에 관한 사항
2.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· 적용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촉) ① 고문변호사는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(법인,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.

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해촉)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
2.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
3.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
4.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

제5조(소송사건의 위임) 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(민사 · 행정 사건 등)으로서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방송 · 통신분야의 전문성, 소송 수행능력,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.

제6조(사례금 등의 지급)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55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당 외에 1건당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(착수금, 승소사례금)는 수임변호사와의 사건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.

제7조(협의) 실 · 국 및 소속기관장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문활용)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